

#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515호
의결 년월일	2006. 6. 16. (제127회)

제안년월일 : 2006년 6월 7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2006. 4. 28, 법률 제7935호)과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이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변경 함(안 제3조제2항)
- 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심사와 같이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3항)

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도 결산 심사와 같이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3항)

라.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와 관련한 청구서, 답변서의 심사 회부 및 심사보고 등에 관한 기능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대신 윤리특별위원회로 조정함(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을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총 선거후”를 “지방선거후”로 하고 “지역선거구”를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중 “결산심사”를 “결산 등 심사”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예산안 심의)”를 “(예산안 등 심의)”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이를”을 “이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예산안”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결산의 심사)”를 “(결산 등 심사)”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이를”을 “이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로 하며, 동조 제3항중 “결산을”를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로 한다.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제82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석배정) ①(생 략)                      ②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u>지역선거구</u>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예산안과 <u>결산심사</u></p> <p>제61조(<u>예산안 심의</u>)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p> <p>②(생 략)</p> <p>③의장은 <u>예산안</u>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제65조(<u>결산의 심사</u>)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p>	<p>제3조(의석배정) ①(현행과 같음)                      ②<u>지방선거후</u>-----                      ----- <u>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u> -----                      제5장 예산안과 <u>결산 등 심사</u></p> <p>제61조(<u>예산안 등 심의</u>) ①-----                      -----                      -----                      ----- <u>이를 기금운용 계획안과 함께</u> -----                      -----                      ②(현행과 같음)                      ③----- <u>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u>-----                      -----                      -----                      -----</p> <p>제65조(<u>결산 등 심사</u>) ①-----                      ----- <u>이</u>                      ----- <u>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u> -----                      -----                      -----</p>

현행	개정안
<p>②(생략)</p> <p>③의장이 <u>결산을</u>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p> <p>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에 회부하고 그 부분은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p> <p>②(생략)</p> <p>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에 회부한다.</p> <p>②<u>징계자격특별위원회</u>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p> <p>③<u>징계자격특별위원회</u>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p> <p>④(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③----- <u>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u>를 ----- -----</p> <p>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 --- <u>윤리특별위원회</u>-----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 ----- <u>윤리특별위원회</u>----- -----</p> <p>②<u>윤리특별위원회</u>----- ----- ----- -----</p> <p>②<u>윤리특별위원회</u>----- ----- -----</p> <p>④(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p> <p>②(생략)</p> <p>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u>윤리특별위원회</u>는 -----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u>윤리특별위원회</u>----- ----- ----- -----</p> <p>②(현행과 같음)</p>